

준 비 서 면

사 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 2015-16711)
청 구 인 참여연대 (대표자 정현백)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피청구인 인사혁신처장
청 구 일 2015. 09. 04.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 다 음 -

1. 피청구인 답변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상 정보의 공개가 원칙이나,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도 공개의 원칙과 대등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

나. 이 사건에서 공개가 거부된 정보인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합니다)' 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다. 이 사건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 사

유에 해당한다는 점,

라.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범위를 정할 당시 청구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비공개 한 것이어서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을 들어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의 이러한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 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제1조에서는 명시적으로 이 법의 목적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을 통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취업과 행위에 대한 정보는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초적인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나. 공직자윤리법 개정 및 시행령 제35조의5의 해석

- 1) 공직자윤리법은 작년 1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 기준을 엄격하게 확립하기 위한 개정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기존의 법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법률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과 같은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¹⁾
- 2)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취업제한 대상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업무에서 소속기관업무로 제한을 강화하고, ②취업제한 대상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퇴직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③취업제한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④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⑤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처벌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4. 5. 20.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통해, 해양수산부 출신의 퇴직 관료들이 유관기관에 취업하여 여객선의 화물적재, 구명 장비와 소화설비 등의 점검, 선박 안전운항 관리·감독 및 선박의 안전검사 등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원전비리문제 등 주요 사건에서 고위공직자 재취업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일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요건에 각종 제한을 두어 사실상 취업제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된 제도적 허점 때문임.

이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관련 심사과정에 투명성을 부여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대상 업무를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 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에서 퇴직일부터 3년으로 연장함(안 제17조제1항).

나. 공직유관단체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안 제17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심사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라.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을 위반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29조).

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3)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공개항목 중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의 결과를 예시적으로 나열한 다음(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제1항), 예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꾀하였습니다. (같은법 제19조의3 제2항)
- 4) 이러한 맥락에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5조의5는 모법 제19조의3의 예시된 공개항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법령에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언의 해석으로도 이는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예시한 것이지 공개의 범위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법령의 의도가 공개의 범위를 한정한 것이고, 열거되지 않은 항목 이외의 정보를 비공개하라는 의도라면, 굳이 ‘공개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을 제외한 정보는 비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 소결

공직자윤리법의 목적 및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이유,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 신설 이유와 동법 19조의3과 시행령 제35조의5의 합문언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가 공직자윤리법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기관으로서 관련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해석도 몰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 답변의 요지는 이 사건 정보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는 일부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²⁾이므로, 개인식별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공개에서 고려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조금 더 완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나. 판례는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조건 공개를 불허할 것이 아니라, 개인식별정보인 경우에도 공익과 사익의 무게를 비교하여 정보의 공개라는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식별정보의 공개로 인해 개인이 받을 권리의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비공개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부서 및 직위’는, 취업제한 대상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부서업무에서 소속기관업무로 강화한 개정취지를 고려할 때, 공개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2) 수원지방법원 2000. 9. 20. 선고 2000구932 판결

청소년수련시설 및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점검결과 및 그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내용 가운데 시설운영자의 개인에 관한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노약자 등 불특정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위와 같은 시설의 소방관리실태 및 문제점 등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 2001. 6. 13. 선고 2000구36473 판결

국외활동을 한 국회의원이나 그 보조직원 또는 국회의원이 면담한 사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공적인 임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면 비공개대상이 된다고 하는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보공개법 일반 및 공직자윤리법과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따른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관련법 개정 당시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정보임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비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공개를 요청하여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피청구인이 지난 9년 동안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해 온 '신뢰'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신뢰보호의 원칙과 무관한 내용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알면서도 이를 들어 항변한다면 행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이를 몰랐다면 관련 업무 소관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다. 참고로, 청구인이 관련법 개정 당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률의 해석이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해석될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밝힌 바대로 문언의 기술적 해석뿐만 아니라 합목적적 해석으로도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5. 결론

피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합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제남의원 대표발의)

2015. 11. 12.

청구인 소송대리인

범무법인 이레월드

담당변호사 방 서 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귀중